

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45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5. 9. 22.

제출자 : 달성군의회



1. 제안이유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령 등의 경쟁 제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권고한 바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문 제목 변경(안 제15조)

나. 경쟁 제한 · 차별적 규제 삭제(안 제15조제1항)

- 제15조제1항 조문 삭제
-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진입규제 개선
-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진입 촉진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20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5. 9. 22. ~ 10. 12.) 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 제목 “(우선구매·판로 지원)”을 “(판로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1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(약칭: 공정거래법)

제120조(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)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·거래조건의 결정,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,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,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·고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예규·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·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한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